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3년 4월 3일

나. 회부일자 : 1993년 4월 3일

3. 제안이유

정년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공무원에 한하여 실시하던 3개월간의 특별휴가 제도를 별정직공무원까지 확대하여 공무원간 형평유지와 퇴직전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토록 하기 위함.

4. 주요골자

근무 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5. 검토의견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현재 정년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공무원에 한하여 3개월간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대하여 공무원간의 형평 유지와 퇴직전 사회 적응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대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승인하여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첨 부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